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회
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수신
전 조합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조
법·제도 담당

제목
‘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’ 관련 입법예고 주요내용
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

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‘22.3.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「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」 일부 개정(안)은 ‘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’을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동 개정(안)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불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‘22.3.18(금)까지(FAX : 02-718 -7171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‘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’ 주요내용

- 건설폐기물(건설현장,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)에 한해서 불연물 함유량이 중량기준 10% 이내 반입 의무 부여(위반 시 1차 행정처분 “경고”)
-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중 건설폐기물, 사업장폐기물 등 구분 없이 사전 분리·선별 무제한 허용(다만 선별시설 설치 불가)
※ 사전 분리된 불연물의 경우 배출자 신고 후 성상에 따라 매립, 재활용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가능
⇒ 통제권한이 없는 소각업체에게 반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
이므로 규제 심사 과정에서 지속 이의제기 예정

※ 「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」 일부개정(안)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 및 협회 홈페이지(자료광장-법령광장)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불 임 : 1. 「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」 일부개정(안) 주요내용 1부.
2.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장

대리 김정훈 기술지원팀장 한인성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이민석
회장 강경진
협조자
시행 한공조 2022 - 91 (2022. 3. 8) 접수
우 045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「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」 일부개정(안) 주요내용

1 시행령 주요내용

□ 폐기물처리시설 중 열분해시설 개정(별표 3)

- 중간처분시설 중 열 분해시설 → 열분해 소각시설 / 재활용시설 중 열분해 시설로 구분 신설(시행규칙에 열분해 재활용 시설 설치·관리·검사기준 등 신설)

2 시행규칙 주요내용

가.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기준 완화(제17조의2)

- 지정폐기물 변경신고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질·상태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

나.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사항 개정(제50조제1항)

-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
 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(변경신고 제외)
 -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(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)
 -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(변경허가 제외)
 - 폐기물 수집·운반 신고를 한 경우(변경신고 제외)
 -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

다. 보고서 제출방식 개정(제60조제1항)

- 매년 폐기물 발생·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(법 제45조2항)을 이용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

라. 폐목재 분류(14종 → 5종) 간소화(별표 4)

- ①원목상태의 깨끗한 폐목재, ②접착제·페인트·기름·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, ③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, ④폐반침목, ⑤그 밖의 폐목재류

마.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방법 추가(별표 5의3)

-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·복토재·도로기층재·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추가
 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바닥재(25% 이하) +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(75% 이상)
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용출기준 [나목2)가)(5)(나) (염소화 합물은 제외한다)]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가능
※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

바.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(별표 8)

- 폐기물처리시설을 통과하는 차량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를 거치도록 해야 함(제1호카목 신설)
-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, 보관,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불연물은 공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(제3호다목 신설)
 - ※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중 건설폐기물, 사업장폐기물 등 구분없이 사전 분리·선별 무제한 허용(다만 선별시설 설치 불가)
 - ※ 사전 분리된 불연물의 경우 배출자 신고 후 성상에 따라 매립, 재활용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가능

사. 소각시설의 관리기준 개정(별표 11)

- 소각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(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불연물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10% 이하인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)만을 소각하여야 함
※ 위반 시 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1개월, 3차 영업정지 3개월, 4차 영업정지 6개월(별표 21 제2호다목가) 신설

아. 행정처분기준 개정(별표 21)

-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
-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

3 부 칙

가.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사항(제50조제1항)

-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

나. 공포한 날부터 시행

「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건의의견

일부개정법률(안)	수정 건의(안)	사 유

2022. 3. .

업 체 명 :

대 표 자 : (인)

담 당 자 :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
귀중